

병협, 법정단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글·박명인 | 의계신문 국장

지난 1월23일 열린 병협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 회장 합동회의에서 의협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마련한 토론회와 의료정책 포럼에서 의협이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병협을 포용해야 한다며 병협을 의협 산하단체로 두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계획에 대해 당시 참석자들은 심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일부 부회장은 “의협이 100주년을 하든 200주년을 하든 자신들의 사업을 하면 되지 왜 병협을 굳이 연관시켜 산하단체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병협이 의협을 산하단체

로 두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며 맞대응 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들춰내지 않더라도 그동안 의협은 각종 회의에서 병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 인식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병협 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마디로 의협이 병협을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의협을 병협의 산하단체로 두자

그런데 최근 병협과 의협이 또다시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병협의 법정단체라는 뜨거운 감자가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전국 900여 병원들의 대변인인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과연 의료법에 규정된 법정단체로 출범할 수 있을 것인가.

병협의 법정단체화 움직임은 병협이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병협은 새회장이 취임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관례화 되다시피 했으나 그동안 의협의 강력한 반대와 복지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맞물려 법정단체화는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동안 병협의 법정단체 움직임은 다른 현안과제에 묻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의료계에 의약분업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병협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법정단체는 병협의 숙원사업

의약분업은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온 이후 의료계의 사활이 걸린 최대의 현안과제라는 사안 이외에도 의료계 종주단체라는 의협과 병원계의 대변인을 자처해 왔던 병협으로서는 서로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로 인해 사사건건 견해차이를 드러냈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마치 병원들이 의료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조직으로 인식,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토로해 왔다.

특히 의협도 병원들을 하나의 의협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아닌 다른 직능단체로서 생각해서 각종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번번히 제외시키고 단지 개원가의 이익만을 위한 단체로서 스스로 울타리를 쌓아 버림으로서 병원들이 의협이라는 단체에 대해 심각한 불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이같은 모습은 병협이 회원병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출시켰고 결국 그동안 물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병협의 법정단체화라는 카드를 꺼내들도록 했다.

의협은 개원가의 이익만 대변

현재 병협의 법정단체화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병협은 민주당 김성순의원을 청원인으로 법정단체화에 관한 의료법개정 청원을 통해 “현재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별로 전국 조직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별로도 전국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병협은 “의료법에 의료인단체는 설립토록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단체의 설립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약사단체 설립근거와 약업단체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약사법과 비교해 볼 때에도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의사 및 병원종사자 등에 대한 수련교육의 향상 등을 통해 병원의 발전과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의료기관의 경쟁력제고가 당면한 현안과제로서 병협은 의료법상의 법정단체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전국조직화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중앙회의 설립을 의무화(안 제 26조)하고 병협을 의료기관중앙회(안 부칙 제2조)로 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병협을 의료기관 중앙회로

병협으로서는 김성순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통해 의료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의료기관(병원)에 대하여는 단체설립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인단체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병원)도 단체설립을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병원)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고 전공의의 수련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 관한규정 제20조) 공적인 기능도 있으며 약사법에서는 약사회와는 별도로 약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약사법 제62조)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의료법에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법등과 형평성에 문제

현재 병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반대청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병협의 법정단체 추진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위협

이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는 등 병협이 법정단체를 놓고 의협과 병협이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기관 단체의 법정단체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현재 복지위원회에서는 의협의 반대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김광태 병협회장은 2월20일 열린 제16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의협이 어떤 반대를 하든 병협의 법정단체화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현재 의협은 치협·한의협과 공동으로 최근 국회에 병협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통해 의료인에게 의료인의 단체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공익성과 전문성,위험성 때문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성 때문이라고 지적,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병협의 입장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등과 반대청원

특히 의협은 병협의 경우 의료기관 경영의 권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단체는 계약법인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며 의료기관 단체에게 개개 의료기관 가입을 강제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의료기관 단체의 권익을 위해 헌법이 정한 의료기관 결사해체(탈퇴)의 자유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번 청원이 통과될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모든 직역에서 보건의료단체의 난립현상이 일어나 의료시장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월22일 청원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병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데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의협의 청원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지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협이 병협의 법정단체화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그다지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백년대계 위해 관찰시켜야

그러나 의협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던 병원계로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병협의 법정단체화는 관찰시켜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병협으로서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병협의 법정단체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병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를 관찰시켜야만 전체 병원들의 대변자로서 그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병협의 법정단체화는 병원계로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장 큰 현안과제로 등장한 것 만큼은 틀림없다. 